사학연금기금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의 기부금 한도초과에 관한 법인세제 개선방안

최 원 석*, 최 기 호**, 김 수 성***

〈초 록〉

현재 공적연금제도의 하나인 사학연금은 일반 민간 기업에서 퇴직시에 지급하는 퇴직금과 유사한 성격의 '퇴직수당'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사립학교연금법에서 지급하고 있는 퇴직수당제도는 학교법인인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이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가와 공단 및 대학의 일부가 이를 분담하여 지급하고 있다. 사학연금공단에서는 매년 236억원을 연금기금에서 지급하였으며, 동 금액은 기부금으로 손금산입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부금의 손금 인정비율이 50%로 축소되어 실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기부금으로 처리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세무회계적인 접근을 통해 법인세제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의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이 기금회계에서 지급되어 기부금으로 보고 있는 기존의 예규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하고 사학연금기금의 세무회계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퇴직수당의 급여지급은 엄밀하게 살펴보면 기금회계의 대상이 아니라 연금제도의 고유사업인 연금회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현행 공단의 회계처리 및 기금회계 과세대상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면밀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기금의 법인세 부담으로 인한 연금재정 악화를 사전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사학연금기금에 대한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법적 개선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단은 사립학교 법인을 대신하여 공단에서 대신 지급하면서도 이에 대해 기부금으로 보는 규정으로 인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어 부담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면서 법인세도 부담하고 있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금제도실 차장

〈초록(계속)〉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공단 내부회계규정의 수정을 통해 퇴직수당의 연금회계 적용을 주장하고자 한다. 퇴직수당제도는 연금급여와 관련된 것으로 비과세대상의 고유목적사업 회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퇴직수당을 기금회계에서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 논리상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둘째, 학교법인을 대신하여 기금에서 대신 지급하였다는 것은 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금법상에서 강제로 부과된 부담금으로 이를 필요경비로도 보아야 한다. 셋째, 학교경영기관이 마땅히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임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기금에서 부득이하게 지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퇴직수당부담금은 현행의 법인세법상 기부금 한도초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법인세가 과세되고 있는 사학연금기금의 과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금제도의 틀 안에서 퇴직수당제도의 법적 부담을 검토한 연구와는 달리 법인세법상의 세무적 검토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핵심용어 : 퇴직수당, 퇴직수당 공단부담금, 법정기부금, 기부금 한도초과, 연금회계, 기금회계, 사학연금기금

제1장 서 론

현행 사학연금회계는 연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되고 있다. 연금회계는 사학연금 재직자가 은퇴 이후 시점에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기금의 적립금을 쌓고 있는 현재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부담금의 징수와 노후에 누적된 기금을 근거로 연금을 지급하는 연금급여의 지급과 수령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회계를 말한다. 반면, 기금회계는 누적된 기금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통해 가득한 기금운용상의 이익에 대하여 운용수입과 필요경비를 관리하는 수익사업회계에 해당된다. 현재 연금회계는 고유목적을 위한 사업으로서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며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있다. 그렇지만, 기금회계는 수익사업회계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며 법인세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조정의 과정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게 된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노령연금과 장애·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속연수에 따라 누적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특수직역연금에서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연금법상에서 퇴직급여·유족급여·장해급여와 퇴직금 성격의 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퇴직금과 퇴직수당은 근로 보상적 성격의 급여라는 점에서는 공통되나 지급하는 근거법이 근로기준법이냐 연금법이냐 만이 다를 뿐이다. 일반 민간기업의 퇴직금과 유사한 퇴직수당 제도는 특수직역연금 제도에서도 공히 지급하고 있다. 다만, 지급하는 주체가 다른 것이 특징적이다. 군인연금제도의 가입자인 군인과 공무원연금제도의 가입자인 공무원은 국가가 사용자의 의무가 있으므로 퇴직수당의 재원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사학연금제도의 가입자인 사립학교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의무는 사용자인 학교법인이 전액 부담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 이유로는 사립학교 재정이 열악하여 퇴직수당의 재원 마련이 학교법인 자체만으로는 어렵다는 현실적인 상황으로 학교법인이 일부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대신하여 재원의 상당부분을 보조하고 있으며, 사학연금기금에서도 일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학연금기금에서 퇴직수당부담금으로 매년 236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공단에서 부담하고 있는 퇴직수당부담금 236억원은 본질적 성격상 연금제도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민간의 퇴직금과 유사한 급여로서 퇴직수당 자체가 연금회계 대상에 해당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재원부담을

사학연금기금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법인을 대신하여 기금이 이를 대신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1991년부터 사학연금기금에서 부담하고 있는 퇴직수당부담금은 매년 236억원으로서 현재까지 6,160억원 가량의 재원을 부담하여 왔다. 이는 학교법인을 대신하여 사학연금기금에서 부담하는 것으로서 당초 학교법인의 재정상태가 양호해 질 때까지 한시적인 기간만 지급하기로 한 것이었으나, 현재까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금액은 기금회계 측면에서 손익계산서에 기부금으로 인정되어 현행 세법상 기부금인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다. 동 금액은 학교법인에게 기부하는 형태로 하여 기금회계에서 법정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하여 왔다.

현재 기금회계에서 지급되는 퇴직수당 공단부담금 236억원은 전액 비용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세무조정 과정을 거쳐 기부금 한도초과 규정에 의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현재 법정기부금의 손금 인정비율이 50%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236억원 중에서 기부금 한도초과로 인하여 118억원이 손금불산입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2017년에는 법인세가 62억원이 부과되었으며, 2018년에는 12억원이 부과되었다. 그리고 2019년도부터는 매년 25.9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사학연금기금은 매년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규정으로 인하여 향후 법인세 납부의 가능성은 상존하게 된 것이다.

퇴직수당제도는 특수직역연금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급여의 일종이지만, 연금기금에서 퇴직수당 급여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 기금은 오직 사학연금기금에만 해당하는 문제이며[1], 매년 기부금 한도초과로 인해 과세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기금도 사학연금기금에만 적용되고 있다. 사학연금기금은 법인세 신고 시에 퇴직수당부담금 236억원에 대하여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손금불산입 되고 있다. 과거 사학연금기금은 기부금 한도초과에 대한 문제를 간과하여 왔었다. 그렇지만, 최근 기금운용이익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기부금 한도초과의 세제상 취급은 연금재정 안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제개선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학연금기금의 재정 안정화에 기여토록 하는 회계·세무적 개선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퇴직수당에 대한 세법상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사학연금제도와 관련되어 수행된 연구는 아주 소수에 달하고 있다. 사학연금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문헌은 용역보고서를 통한 일부가 존재하고 있으며, 사학연금기금의 법인세제와

1. 공무원연금제도에서도 1995년까지 공무원연금기금에서 퇴직수당부담금을 부담하여 오다가 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하였다. 공무원의 사용자는 국가이므로 공무원의 퇴직금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국가에서 퇴직수당의 재원 전액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관련된 법적인 개선에 관한 연구 또한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사학연금기금의 운용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의 법제적 연구를 다룬 연구로 김수성(2008)의 연구가 있었으며[2], 사학연금기금의 운용이익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액 설정토록 하여 법적인 개선을 완료 조치한 김수성(2009)의 연구가 있었다.[3]

그간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학연금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한 연구가 주된 부분을 차지하였는데, 한국보험학회 연구용역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간 보고서가 있다.[4] 이외에 신흥식과 노인철(2000)의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5], 전춘옥 등(2001)의 연구에서는 연금충당부채에 관한 초기연구로서 연금회계처리에 관한 보고서가 있었다.[6] 이밖에, 사학연금제도의 퇴직수당과 관련한 법적 문제점을 다룬 연구로는 강강원(2005)의 연구가 있다.[7]

본 연구는 과거부터 사학연금공단에서 지급해 온 퇴직수당부담금의 과세문제에 대하여 법인세가 실제로 발생하게 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루고자 하였으며, 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연금회계와 기금회계의 세무회계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세제적인 이슈 사항 이외에 사학연금의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의 태동배경을 살펴보고, 기부금 한도초과에 대한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계·세무적인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공적연금회계의 양대 축인 고유목적회계와 기금회계 간의 구조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에 대한 법인세제의 과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현재 사학연금기금은 퇴직수당의 지급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법인세 과세문제로 인하여 연금재정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자구책을 마련하여 사학연금기금의 재정안정에

---

2. 김수성. 2008. 공적연금기금 운용이익의 과세여부에 관한 법제적 연구 : 사학연금기금 운용이익 과세를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제25권 제2호 : 93－138
3. 김수성, 2009. 연·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세무학연구 제26권 제2호 : 117-155
4. 사학연금공단은 한국보험학회에 1999년「사학연금 책임준비금산정 및 재정안정화방안 연구」용역과 2001년「사학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고,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2006년에「 사학연금재정안정화 방안연구」용역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용역은 재정효과(기금고갈 시점 등) 및 후생효과 분석(연도별, 교직원별 부담금과 급여금의 비교), 책임준비금 산정결과에 의한 기금부족분 진단 등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연금법 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2008년에는 한국사회보험연구소에서「사학연금의 종합적 발전방안 연구」에 관한 용역보고서를 발간하였다.
5. 신흥식·노인철. 2000. "국민연금 기금 운용 회계기준의 실제 비교".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센터 연구보고서 2000－06.
6. 전춘옥·이효익·이석영. 2001. "연구보고서7호 연금회계". 한국회계연구원.
7. 강강원, 2005, 퇴직수당의 법률적 성격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 통권 제19권 제1호 : 65-109,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실질적기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법인을 위하여 대신 퇴직수당 부담금의 재원을 일부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세금까지 부담하고 있어 사학연금 측면에서는 이중의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퇴직수당부담금 지급으로 인한 기부금 한도초과의 세제상 취급은 제도적 개선과 세법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공단 퇴직수당부담금 236억원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연금지급과 관련된 사항으로 연금회계에 관한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법인세 과세대상인 기금회계 측면에서 볼 때 부담금 지급에 대한 사항은 법인세의 세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재원부담은 학교법인이 조속히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퇴직수당과 관련하여 회계와 세제 검토를 통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제2장에서는 사학연금의 퇴직수당제도와 관련한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법인세 신고 현황을 살펴본 후 제3장에서는 퇴직수당 공단 부담금의 과세와 관한 문제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사학연금의 퇴직수당 공단부담금과 관련한 회계처리를 검토하고 회계처리상의 이슈사항을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사학연금 공단 부담금 지급에 따른 법인세제 관련 개선방안을 논한 후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연구의 결론을 맺고자 한다.

제2장 사학연금제도의 퇴직수당 내용 및 법인세 신고 현황

1. 사학연금제도의 퇴직수당 내용

가. 퇴직수당제도의 주요 내용

(1) 「사학연금법」상 퇴직수당 도입 연혁

퇴직수당제도는 1991년 10월 1일 신설된 제도로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사학연금 가입자에게 일시금 급여의 하나이다. 이는 기존에 지급해왔던 퇴직(유족)급여가산금 제도를 폐지하고 재직기간 1년 이상인 교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민간기업의 퇴직금과 같은 성격의 급여에 해당된다. 사학연금제도의 퇴직수당 급여제도는 민간기업의 퇴직금제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퇴직수당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 부담은 크게 법인부담금과 국가부담금 및 공단부담금으로 구성되었다. 퇴직수당제도는 1993년 1월 1일에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어 퇴직수당의 법인부담금을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상태가 개선될 때까지 공단 및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되었다. 이러한 금액 중 공단이 236억원을 부담하고[8] 나머지는 국가에서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 개정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수당은 사용주인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원칙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사학연금제도의 위탁관리자로서 위상이 있을 뿐 사학 교직원의 고용주나 사학연금제도의 법적 운영주체인 국가로서의 위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수당 공단부담분에 대한 부담주체는 고용주는 법인이나 국가가 되어야 한다. 사학연금은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온 바, 2014년 3월에는 대학 경영기관은 퇴직수당 재원의 40%를 부담하기로 법 개정이 되었으며, 2016년 3월에는 국립대학병원 경영기관은 100%를 부담하기로 법 개정이 완료되었다.

8. 퇴직수당 공단부담금(236억원) 산출 근거로는 다음과 같다. 퇴직수당 공단부담금 제도가 1991년 10월 1일 신설되었을 당시 전년도인 1990년의 퇴직급여가산금과 유족급여가산금 지급액의 합계액을 공단부담금으로 하였다. 즉,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은 22,136,909천원 + 1,493,446천원 = 23,630,355천원이다.

(2) 퇴직수당제도의 타당성 제기

퇴직수당제도의 타당성은 다음과 같이 제기될 수 있다. 퇴직급여가산금과 유족급여가산금은 1985년도부터 지급되었으나 1991년 퇴직수당 급여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를 폐지하였다. 퇴직수당제도는 공무원연금제도에서 먼저 도입되었으며, 국공립교직원과 사립교직원간에 형평성 유지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에서도 이를 도입하였다. 퇴직수당제도의 도입이유는 다음과 같다. 공무원은 민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명목의 퇴직소득제도가 없어서 민간 근로자와 비교할 때 형평성이 결여되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도입하였다.

(3) 퇴직수당 제정 이유

공무원연금제도의 퇴직급여는 민간기업 근로자의 퇴직금과 같이 퇴직 후 경제적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공무원의 퇴직소득에 해당된다. 퇴직수당제도는 1949년 8월에 국가공무원법을 제정하면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 법에서 공무원의 퇴직금과 공무상 재해보상에 관한 법률을 정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공무원 직군의 사회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연금제도 실시가 거의 10여년 이상이나 지연되어 왔었다. 그러다가 1960년 1월 1일에 공무원연금법을 제정하고, 공포・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라는 특수직역을 대상으로 국가의 책임 하에 운영하는 공무원연금제도가 비로소 시행되었다. 이와 같은 제도 태동 배경에 따라서 국가 공무원들은 기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지 않고 공무원연금제도에 의한 퇴직급여 등을 받게 되었다. 반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1961년부터 소속교직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1975년에 연금법을 제정・시행하면서 퇴직금 제도는 폐지되었다.

퇴직수당제도의 법 개정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다. 1988년 국민연금법 시행 전후로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과 민간근로자 간의 노후 소득보장체계에 큰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특수직역 종사자는 퇴직금 제도가 없어 퇴직 이후 소득 및 생활보호대책 수단으로 60~70년대부터 연금제도를 시행하여 본인 및 유족까지 생활보호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민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1988년 이후에는 민간 근로자는 퇴직할 때 퇴직금과 국민연금 두 종류의 소득이 보장되는 체계로 바뀌었다. 반면,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은 기존 연금제도 상 퇴직급여에 의한 소득보장만이 존속하였다. 그 결과

양 직종 종사자 간의 소득보장에 있어서 제도적 불평등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1991년 10월 1일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 후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이외에 정부가 예산으로 직접 지급하는 퇴직수당제도를 신설하였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퇴직금과 국민연금 두 종류의 퇴직소득을 받고 있는 민간 근로자와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서 퇴직수당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9]

나. 퇴직수당의 재원부담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는 노후에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에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연금급여는 기여제 비용부담방식을 채택하여 공무원 연금제도 가입자인 공무원과 사용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였다. 사학연금제도의 경우에도 공무원연금제도와 마찬가지로 연금 가입자인 사학교직원과 사용자인 학교법인, 또는 국가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반면, 민간 근로자의 퇴직금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반면,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경우 퇴직수당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전액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사학연금의 경우에는 퇴직수당에 소요되는 재원은 사용자인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재정이 열악하여 236억원은 사학연금기금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잔액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써 학교법인은 실질적으로 퇴직수당의 부담금에 대하여 전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어 퇴직수당 제도는 비기여제도의 퇴직수당제도라고 할 수 있다.

9. 1991. 1.14 법률 4334호 법 개정 제안 이유, 강강원(2005)의 pp.77~78 참조

2. 사학연금기금의 법인세 과세 현황

가. 사학연금기금의 퇴직수당부담금 관련 법인세제 검토

(1)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기부금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법인 사업과 직접적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한다. 또한,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비합리적으로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과 차액 중에서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10]

현행법상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을 수령하는 상대방에 따라 손금산입 한도가 각각 상이하다. 우선, 법정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이외에 국방헌금과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 구호금품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등에 지출하는 시설비와 교육비 및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말한다.

사학연금기금에서 지급하는 퇴직수당부담금인 236억원은 법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의 규정을 적용한다.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법정기부금의 납입액과 기부금 손비 인정 한도를 비교하여 기부금 계상금액이 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이 달라진다. 이렇듯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당해 사업연도소득금액(기부금을 손금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이월결손금]×100분의 50%(2009년 이전까지는 75%)]의 금액과 법정기부금 계상액인 236억원을 비교하여 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산출하며, 이렇게 산출된 초과금액은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란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하는 모든 기부금, 즉 법정기부금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을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와 같이 기부금 한도초과액 계산과 관련된 세무조정은 「차가감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만 기부금 한도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세무조정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정기부금을 가산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한도초과 여부의 검증이 되지 아니한 기부금의 효과를 제거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

10.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①항, 제②항

(2) 퇴직수당부담금의 기부금 한도초과 손금불산입

퇴직수당부담금의 재원부담과 관련하여 퇴직수당부담금은 수익사업회계에 해당하는 자금운용사업회계에서 비용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수익사업회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시 공단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등에 기부하는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왔다. 공단에서는 2000년까지 세법상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등에 대한 법정기부금은 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었으나 2006년부터는 당해연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5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를 세무회계에서는 '기부금 한도초과'라고 명하고 있다.

사학연금기금에서 매년 236억원을 퇴직수당부담금으로 부담하는 바, 이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사용자인 학교법인이 재원을 부담해야 할 성격의 재원을 공단의 연금기금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1991년부터 매년 지급하는 236억원에 대하여 기부금 한도초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사학연금공단의 경우 사학법인을 대신하여 퇴직수당금액 236억원을 매년 지출하는데 이는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며,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별지 제3호 서식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의해 산출된다.

나. 세 차례의 법인세 실제 납부 금액 발생

사학연금기금은 실제로 법인세를 납부하였던 적이 세 번 있었다. 그것은 2011년과 2017년 및 2018년에 걸쳐서 법인세 과세금액이 42억원과 67억원 그리고 13억원이 발생한 것이다. 2011년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한도가 전액 설정되지 못하여 법인세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 개정을 추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액 설정하게 되었다. 반면, 2017년도에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의 적용과 기부금 한도초과로 인하여 법인세액이 발생한 것이다.

2017회계연도 법인세 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으로 보고된 금액은 1,488,396백만원 이였고, 익금산입 금액은 309,686백만원원이며, 손금 산입액은 1,659,974백만원이다. 이를 통해 차가감소득금액은 138,109백만원 이었으며,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11,815백만원이다.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은 149,924백만원이며, 이월결손금은 119,939백만원이다. 과세표준금액은 29,984백만원이며, 세율 22%를 적용하면 산출법인세액이 6,176백만원이 된다. 사학연금기금의 2017년과 2018년의 법인세 납부 실적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사학연금기금의 2017~2018년 법인세 납부 실적

(단위 : 백만원)

세무조정 내역		2017년도	2018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1,488,396	-484,664
	익금산입	309,686	1,245,530
	손금산입	1,659,974	76.0,866
	차가감소득금액	138,109	0
	기부금한도초과	11,875	20,900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손금산입	0	0
	각사업연도소득금액	149,924	20,900
이월결손금 잔액		119,939	14,630
과세표준		29,984	6,270
세율		22%	22%
산출세액		6,176	1,234
지방세(10%)		617	123
총납부세액		6,793	1,357

다. 과거 법인세 신고 현황

최근 사학연금기금은 수익사업 다각화를 통해 연금재정을 확보하고 있으며, 과거의 소극적인(passive) 투자전략을 지양하고, 능동적인(active) 투자형태로 전환하여 적극적인 투자수익을 획득하고 있다. 즉, 채권위주에서 부동산투자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11] 이러한 사업다각화는 2011년 실제적인 법인세 과세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사학연금기금 운용이익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액 설정하도록 법 개정을 통하여 2011년 이후부터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2년도부터는 기부금 한도가 50%로 감소하였고, 급기야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에 따른 법 개정으로 인하여 2017년도부터는 다시 법인세가 과세되기 시작하였다.

법인세 과세의 주된 이유로는 사학연금기금이 부담하고 있는 퇴직수당부담금인 236억원이 기부금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기존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되던 것이 법인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11. 자세한 내용은 김수성(2008)의 연구를 참조할 것.

기부금 한도가 50%로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이유로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에 따른 법개정으로 인하여 공단의 세무조정상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전액 공제받지 못하여 실제적인 법인세가 납부된 것이다. 다음 〈표 2〉는 과거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사학연금기금의 과세소득금액을 나타낸 것이다. 매년 사학연금기금이 부담하고 있는 퇴직수당부담금인 236억원은 기부금 한도초과가 발생하였으며,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 적용에 따라 과세가 되어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의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과거 사학연금기금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당 기 순 이 익	6,335	3,972	5,315	4,823	6,036	5,406	5,146	14,884	-4,846
익 금 산 입	2,366	4,157	3,277	5,936	3,645	3,454	4,371	3,097	12,455
손 금 산 입	7,514	7,844	10,129	10,876	9,859	9,255	9,853	16,600	7,608
차 가 감 소 득 금 액	1,187	285	-1,537	-117	-178	-395	-336	1,381	0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236	60	236	236	236	236	236	118	209
각사업연도소득금액	1,423	345	-1,301	119	59	-159	-99	1,499	209
이 월 결 손 금 액 잔 액	169	-	-	119	59	-	-	1,199	146
실 제 법 인 세 납 부 액	-	42	-	-	-	-	-	62	12

㈜ 사학연금공단, 2010년~2018년, 세무조정계산서 참조함.

라. 2019년도 이후의 법인세 납부 예측치

기부금 이외에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이월결손금도 없고 당해 공단에서 지출한 236억원 밖에 없다고 가정할 경우 기부금 지출액의 50%가 한도초과가 되므로 118억원이 손금불산입된다. 이에 대한 법인세율을 적용하면 대략 24억원 가량의 법인세 납부가 예상되며, 여기에 10%는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게 되므로 총 25.9원이 법인세 금액으로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학연금기금의 법인세 납부전망치에 대한 금액을 실제금액으로 추정 하여야 하나, 미래의 세무조정을 예측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에 관한 각종 세무조정 과정을 생략한 채, 「차가감소득금액」을 "0"으로 가정하고, 사학연금기금에서 지급하는 퇴직수당부담금 236억원이 사학연금기금의 과세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236억원의 기부금 한도초과에 관한 부분만을 세무조정을 통해 과세상의 금액을 전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약 25.9억원의 법인세 납부세액이 매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12] 퇴직수당부담금 기부금 처리로 인한 법인세 예측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추계할 수 있다. 퇴직수당 부담금 지급액 236억원에 대하여 기부금 한도율이 50% 이므로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118억원이 된다. 이 금액에 한계세율 20%를 적용하면 23.5억원이 납부예상 법인세액이 되며 법인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25.9억원의 산출세액이 된다. 동 금액은 당기순이익 및 익금산입·손금산입은 추정이 불가능하므로 세무조정에서 제외하고 퇴직수당부담금 금액만을 기준으로 기부금 한도초과를 산정하여 총 납부세액을 산정한 것이다.

마. 유관기관의 법인세 신고 현황

반면, 사학연금기금과 동일한 법적용을 받고 있는 공무원연금기금에 대하여는 과거에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사학연금기금은 법인세 납부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공무원연금기금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의 퇴직수당의 재원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제도는 1991년 10월 1일에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며, 퇴직수당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정부가 지급하는 금액은 1990년도의 퇴직급여가산금 및 유족연금가산금의 지급에 소요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13] 그러나 공무원연금기금은 공무원연금의 재정악화를 고려하여 1996년부터 공무원연금기금의 부담을 폐지하고, 전액 국가에서 부담토록 개정하였다.

그러나 사학연금의 경우에는 퇴직금과 유사한 퇴직수당의 지급은 사용자인 학교법인이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퇴직수당은 퇴직금제도의 일종으로서 원래 사용자로서 학교법인이 부담해야할 몫이지만, 현재 법인의 재정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시적으로 사학법인의 재정여력이 생길 때까지 사학연금기금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 즉, 퇴직수당 재원 중에서 236억원은 사학연금기금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차액은 국가에서 부담토록 하였다. 이러한 퇴직수당은 정부가 대납하는 체재로 운영되고 있는 바, 사용자로서 학교법인은 퇴직금에 대해 실제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그다지 크지 않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우리나라

12. 여기에서 차가감소득금액은 이미 퇴직수당부담금이 반영되어 0인 것으로서 퇴직수당부담금 236억원에 대한 법정기부금의 한도초과 효과만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236억원이고, 다른 세무조정사항은 없으며, 퇴직수당부담금이 236억원을 가정하여 차가감소득금액을 0으로 추정한 것이다.
13.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6조의2 제2항.

공적연금의 퇴직수당제도 현황은 〈표 3〉과 같다. 다음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퇴직수당제도는 특수직역연금에만 존재하고, 퇴직금 제도는 국민연금에만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공적연금의 퇴직수당제도 현황

구 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퇴직수당 제도	○	○	○	×
퇴직금 제도	×	×	×	○
법인부담금 공단(기금) 부담액	0원	대학이상 법인 : 40% 국립대학병원 경영기관 : 100% 공단 : 236억원	0원	0원
국가 부담액	전액	(퇴직수당금액-법인·공단 부담액)	전액	0원

(주) 각 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함.

3. 현행 퇴직수당 관련 연금법상의 법조문 이해

이하에서는 사학연금제도의 퇴직수당을 중심으로 언급하되, 공무원연금의 연혁과정을 참고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에서는 법인부담금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현재 사학연금법상에서 제4장 급여에 대한 부분은 일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다. 준용법 제34조인 단기급여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준용법 제46조의4인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부분까지는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제5장에서 별도로 비용부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중 개인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법 제44조에서 언급하고 있고, 국가부담금은 제46조에서, 법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제47조에서 언급하고 있다. 반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에서는 제5장 비용부담에서 언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68조의2(국가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의 금액), 제69조(개인부담금 · 법인부담금등의 납입), 69조의3(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제70조(국가부담금의 계상), 제71조(국가부담금의 납부)에서 언급하고 있다. 이중 제69조의3(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69조의3(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①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에서 각 학교나 학교경영기관, 특례적용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을 뺀 금액의 100분의 40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

② 임상교수요원 및 직원에 대한 퇴직수당지급비용은 학교경영기관이 전액 부담한다.

③ 퇴직수당지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은 1992년도에 공단이 퇴직수당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④ 퇴직수당지급비용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금액과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4. 퇴직수당 지급관련 부담금의 기부금 처리에 관한 예규

가. 퇴직수당 기부금 관련 예규

퇴직수당과 관련하여 기부금으로 처리되는 관련 예규는 크게 공무원연금의 퇴직수당 지급과 관련한 예규와 사학연금에 적용되는 퇴직수당의 기부금 관련 예규가 있다. 우선, 공무원연금공단이 부담하는 퇴직수당 관련 예규로는 공무원연금기금이 퇴직수당 부담금을 지출할 경우는 법정기부금으로 손비처리 되었지만[14], 1995년 12월 29일에 공단 부담 규정이 삭제되어 그 이후부터는 공무원의 사용자인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사학연금기금에서 지급하는 퇴직수당 공단부담금 236억원은 기존의 공무원연금의 경우와 동일하게 법정기부금으로

14. 법인46012-3480(1994.12.20.)【제목】퇴직수당비용을 공무원연금기금에서 부담시 기부금 해당 여부. 【요약】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을 지출할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 【질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퇴직수당비용을 공무원연금기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의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당해 공단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중 일부를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공무원 퇴직수당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15. 법인46012-4425(1995.12.04.)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 부담하는 퇴직수당부담금은 기부금임. 【요약】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일부를 퇴직수당부담금으로 지출한 경우 손금산입되는 기부금에 해당됨. 【질의】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 부담하는 퇴직수당부담금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사립학교 교원연금관리공단이 당해 공단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중 일부를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의3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수당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이 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처리되는 면에 있어서는 동일하나[15],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학연금기금에서 부담토록 하는 측면이 공무원연금제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급기야는 공단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학교에서 퇴직금과 유사한 퇴직수당의 재원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각 사립학교의 재원부족으로 한시적으로 연기금에서 대신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퇴직수당의 재원부담은 공단이 부담해야 하지 않아도 되는 재원을 공단이 대신하여 지급하면서도 기부금 한도초과 적용으로 인하여 법인세까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이중부담의 제도적인 개선은 더욱 필요한 것이다.

나. 유관기관의 사례분석을 통한 퇴직수당 회계처리 검토

공무원연금공단은 퇴직급여가산금제도를 1991년 10월말일자로 폐지하고 11월 1일부터 퇴직수당을 지급하였다. 1991년부터 1995년도까지 기금에서 일부 부담하여 지급하다가 1996년에 들어서는 국가에서 퇴직수당을 지급하였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기금에서 약 5년 동안에 매년 1,536억원을 부담하였으며, 전체적으로 기금에서 퇴직수당을 지급한 금액은 6,162억원이다. 이는 상당한 금액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공무원연금공단에서도 기금에서 매년 1,536억원을 부담함에 따라 기부금으로 처리하였던 것이다. 1996년부터 2011년까지는 퇴직수당급여와 퇴직수당부담금의 금액이 상호 일치함에 따라 공무원연금기금에서 별도로 부담하는 부담금은 폐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12년도부터는 연금회계에서 퇴직수당특별회계로 분리하여 하나의 회계를 신설하게 된 것이다. 참고로 1991년도부터 1995년도까지의 퇴직수당 급여와 퇴직수당부담금의 현황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공무원연금의 퇴직수당급여와 퇴직수당 부담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퇴직수당급여	퇴직수당 국가부담금	공무원연금기금 부담액
1991	16,147	14,237	1,910
1992	274,917	121,337	153,580
1993	400,340	246,760	153,580
1994	460,812	307,232	153,580
1995	613,571	459,991	153,580
합계	1,765,787	1,149,557	616,230

주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통계연보 자료를 활용함

5. 사학연금제도에 대한 국가의 지원 파악

연금제도는 공익을 위한 국가사업에 해당된다. 연금제도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수행하여야 할 성격을 갖추고 있다. 현재 기금을 통해 국가에서 수행할 사업을 대신하고 있으며 사학연금공단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사업에 한하여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수익사업의 운용이익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있는데, 일반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과 같은 수동적소득에 대하여는 전액 설정하고 주식매매이익이나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에 대하여는 50%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에 42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하게 됨에 따라 고유목적준비금을 전액 설정하고자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여 2012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액 설정하게 되었다.[16]

현재 사학연금에 대하여 국가는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부담금으로는 부담금 전체에서 일정 비율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국고위탁사업에 대하여는 전액 위탁사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급여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밖에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퇴직수당의 국가부담금 지원 금액은 전체 퇴직수당비용 중에서 공단과 학교경영기관의 부담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퇴직수당제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 근거는 사학연금제도가 법령에 의하여 태동되었으며, 사학연금제도 자체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이며 사학연금제도는 준정부기관으로서 정부의 기금에 대한 예산과 집행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가능한 것이다. 현재 공무원연금의 퇴직수당 지급에 대하여는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는 국가공무원의 사용자로서 국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사학연금의 퇴직수당 지급에 대하여는 일부만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학교경영기관이 사학연금 가입자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강조하기 때문이며, 공단이 임시방편적으로 236억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은 사학연금제도의 위탁관리자로서의 책임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현재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다. 사학연금의 부담금의 부담률은 공무원연금과는 다소 다르나 급여의 결정시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

16.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법인세법」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나.「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3장 퇴직수당 공단부담금 과세에 따른 문제점

1. 비자발적 기부에 대한 기부금 적용의 문제점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은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며, 기부금한도 초과가 발생하여 실제적인 법인세액이 발생하게 되었다. 공단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노력을 통해, 특례기관 지위를 인정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의해 이월결손금이 없을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100%인정 규정에 의거 납부할 법인세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퇴직수당 공단부담금 236억원의 지급으로 인하여 기부금 한도초과로 법인세가 발생하게 된다. 일반사업부분에서 법인세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지만, 그 이후 계산 되는 기부금한도 계산에 의해 기부금 한도 초과가 발생하여, 2017년 이후 약 62억원의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가 발생이 되어 연금기금 재정안정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하에서는 퇴직수당 공단부담금 236억원의 부담과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의 적용으로 인한 사학연금기금의 법인세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은 기부금을 받는 단체이지 기부금을 내는 단체는 아닌 상황이다. 그러나 공단의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은 기부금의 성격이라기 보다는 연금제도상 불가피하게 사학연금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필요경비의 특성이 있다. 엄격히 보면 이것은 기부금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연금회계 상에서 지출되는 비용의 특성이지만 공단에서 부담할 성격이 아니므로 기금회계 상에서 지출되는 기부금으로 처리하여 비용으로 처리를 하였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성격을 엄밀하게 본다면 기금에서 학교법인을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지출되어야 하는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통상적으로 기부금이라고 하면 비영리법인이 자발적으로 사회적인 공헌내지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하여 정부를 대신하여 정부의 역할을 위임받아 운영하는 것으로서 비영리법인은 기부금을 아주 소규모로 지출하고 있다. 그렇지만 공단은 매년 236억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법에 의하여 지출되어야만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통상적인 기부금의 성격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기부금의 수혜자 또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공단은 사학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금 성격의 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기부금의 수혜가 특정인에게 귀속되지 않아야 하는 데에 반하여 기금에서 지급하는 기부금은 사학연금 가입자에게 국한하고 있다는 것이 기부금의 성격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표 5〉는 일반적인 기부금과 공단의 기부금의 성격을 비교해 본 것이다.

〈표 5〉 일반적인 기부금과 공단 기부금의 성격 차이

구분	일반적 기부금	공단지출 기부금
강제성	자발적으로 지출	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지출
지급규모	일반적으로 소액	상당한 규모로 지급함
정기적인 지출 여부	때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도 됨	법에 의하여 매년 일정액을 부담하여야 함
기부금 수혜자	불특정 다수인	사학연금 퇴직자
기부금 수수여부	통상 기부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임	공단은 기부금을 지출하는 성격이 강함
세무조정 손금부인 여부	일반적으로 소액으로 기부금 한도대상에서 제외됨	매년 50%의 손금부인 처리됨

2. 잦은 법 개정으로 인한 사학연금기금의 법인세 과세의 문제점

가. 기부금 한도 축소 법 개정으로 인한 과세상 문제점

과거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을 개정하여 공무원연금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이익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액 설정토록 하였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란 비영리법인에게 부여하는 특례적 손금산입 규정으로서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하며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연금기금에 세제지원을 부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법 개정 당시 사학연금기금은 이월결손금이 누적되어 있어서 소득이 발생하여도 실제로 법인세를 납부하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2011년에 이월결손금 잔액이 소진되어 42억원을 법인세로 납부한바 있었다. 향후 기하급수적으로 법인세 납부금액의 증가가 예상되었으며, 연금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법 개정을 단행한 것이다.

2017회계연도에는 62억원의 법인세 금액이 발생하였다. 이는 그간의 법 개정으로 인하여

법정기부금 한도의 축소와 이월결손금 적용의 한도 축소로 인하여 법인세 금액이 실제로 발생한 것이다. 이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의 재정수지가 악화되어 연금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재정수지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공무원연금제도에서는 퇴직수당의 비용부담이 국가로 전액 부담주체가 이전되었으나, 사학연금의 경우에는 여전히 일부금액에 대하여 사학연금기금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열악한 사학재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236억원을 부담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현행 세법에서 기부금 한도초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세조치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에 따른 법인세 납부의 문제점

공단은 대기업에 속하지 않지만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의 적용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법인세를 실제로 62억원을 납부하였다. 이것은 법인세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 이외의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소득의 80%를 공제하며, 2018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이월결손금을 전액 공제하지 않고 70%만 공제하며, 2019연도 귀속분에 대하여는 과거 10년 동안의 이월결손금을 60%까지만 한도를 정하여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게 된다.[17]

당초에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일단 결손금이 발생하면 10년간 해당 결손금이 0이 될 때까지 먼저 발생한 결손금을 순차적으로 공제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2016년 사업연도부터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2015년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이 2억원이 발생하였고, 2016년 사업연도에 1억원의 과세소득이 발생하였다고 가정을 할 경우 과거에는 1억원의 과세소득에서 전년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2억원 중에서 1억원을 모두 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2016년 사업연도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1억원의 과세소득의 80%인 8천만원까지만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때문이다. 즉, 1억원에서 공제한도인 8천만원을 차감한 2천만원에 대하여는 과세소득이 발생하여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전년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2억원 중에서 8천만원만 차감하게 되는 것이다.

2015년 개정세법에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취지로는 이월결금 공제가 특정사업연도에 집중하여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연기금의 특성상 투자규모가

17.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는 2015년도에 개정되었으며, 2016년도 사업연도부터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80%까지 축소되었고, 2017년도 8월 입법 예고시에는 2018년도 사업연도부터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70%까지 축소하기로 하였고, 2019년도 사업연도부터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60%까지 축소하기로 하였다.

매우 큰 금액이므로 결손금의 발생이 크게 발생하게 되며, 대부분이 유가증권을 투자하는 경우로서 평가손익의 세무조정에 따라 결손금의 금액변동이 크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보여진다.

현재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의 적용은 모든 법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예외 법인으로는 크게 6가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다.[18] 조특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인들은 과거와 동일하게 이월결손금의 한도 제한없이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연기금의 경우에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법인으로 조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3. 퇴직수당 연금기금 부담에 따른 연금기금재정 악화와 기회손실

1975년 사학연금제도 시행 이래 2018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학연금제도의 개선배경 및 그 내용의 모태인 공무원연금제도를 준용하고 있다. 국공립교원과 사학교원간의 연금제도상의 수혜에 있어서 평등해야 한다는 논리 때문에 이에 편승한 사학연금제도의 경우에도 비용부담 없는 퇴직수당제도로 인해「저부담·고급여」의 수급구조로 변질됨에 따라 재정악화의 원인이 되었다

현재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수당급여 재원부담에서 만큼은 준용하지 않고 있다. 퇴직수당부담금은 대학 법인과 공단이 각각 퇴직수당 지급비용의 40%와 236억을 납부하며, 나머지 금액은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사학연금 퇴직수당 부담금 총액 및 기금 지급에 따른 기회손실액은 다음 〈표 6〉과 같다. 아래 〈표 6〉에서 보는 것과 같이 1991년부터 2018년 말까지 사학연금 퇴직수당 건수는 498,089건, 퇴직수당 부담금 총액은 6조 4,704억원 이였고, 이 중 사학연금기금의 부담액은 약 6,399억원 이였다. 〈표 6〉에서는 이 사학연금 부담액이 지출되지 않고, 채권으로 운용되었다면 발생하였을 투자수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가정에 따르면 퇴직수당 지급의 기회비용으로 전체 570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18.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기업개선계획을 이행중인 법인,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경영정상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정상계획을 이행중인 법인,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이 있다.

해당 기간 동안 퇴직수당을 부담하지 않았다면 매년 지급하는 236억원과 이에 대한 기회비용의 합인 총 6,969억원의 연금기금이 추가로 적립될 수 있었을 것이다.[19] 이는 전체 2018년 말 연금기금액(18조 2,846억원) 대비 3.8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퇴직수당 부담금이 사학연금 연금재정에 악화요인으로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20]

〈표 6〉 사학연금 퇴직수당 부담금 총액 현황 및 기금 지급에 따른 기금 손실액

(단위 : 건, 백만원)

연 도	퇴직수당 건 수	국가부담액 (A)[21]	법인부담액 +합산반납금 부담액 (B)[22]	공단부담액 (C)	퇴직수당 부담금 총액 (D=A+B+C)	채권수익률 (E)[23]	기회손실액 (F=C×E)	퇴직수당 지급액 포함 기회손실액 (G=C+F
1991	741	0	0	1,880	1,880	17.00%	320	2,200
1992	8,634	18,996	0	23,630	42,626	17.74%	4,192	27,822
1993	8,527	28,343	0	23,630	51,973	17.82%	4,211	27,841
1994	10,707	56,435	0	23,630	80,065	16.12%	3,809	27,439
1995	9,561	50,791	0	23,630	74,421	15.09%	3,566	27,196
1996	10,040	55,314	0	23,630	78,944	15.10%	3,568	27,198
1997	10,651	69,887	0	23,630	93,517	13.56%	3,204	26,834
1998	12,503	107,363	0	23,630	130,993	15.49%	3,660	27,290
1999	18,420	261,577	0	23,630	285,207	14.25%	3,367	26,997
2000	17,702	156,610	0	23,630	180,240	12.85%	3,036	26,666
2001	15,529	78,973	0	23,630	102,603	7.97%	1,883	25,513
2002	16,616	101,961	0	23,630	125,591	7.50%	1,772	25,402
2003	17,191	129,440	0	23,630	153,070	7.12%	1,682	25,312
2004	17,134	155,767	0	23,630	179,397	8.10%	1,914	25,544
2005	17,967	161,809	0	23,630	185,439	2.03%	480	24,110
2006	18,813	238,833	0	23,630	262,463	6.25%	1,477	25,107

19. 상기 금액은 매년 지출하는 금액의 단순 합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동 금액을 정기예금금리를 가정하여 복리로 계산하면 2019년도 말에는 2조 9,075억원이라는 기하급수적인 기회비용 금액을 추산할 수 있다.
20. 2018연도 사학연금통계연보에 의하면 2018년 1년동안 지출한 급여 총액은 3조 3,108억원이다. 반면, 퇴직수당급여는 6,080억원을 지급하였다. 퇴직수당급여는 전체 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4%를 차지하였다.
21. 1992년도 국가부담액중 121억원은 학교법인 부담액임.
22. 법인부담금은 2014년도부터 대학이상 법인이 퇴직수당 재원의 40%를 부담하고 있음.
23. 운용수익률은 채권운용수익률로 표기된 것임.

연 도	퇴직수당 건 수	국가부담액 (A)[21]	법인부담액 +합산반납금 부담액 (B)[22]	공단부담액 (C)	퇴직수당 부담금 총액 (D=A+B+C)	채권수익률 (E)[23]	기회손실액 (F=C×E)	퇴직수당 지급액 포함 기회손실액 (G=C+F
2007	21,440	188,137	0	23,630	211,767	3.97%	938	24,568
2008	22,520	269,641	0	23,630	293,271	7.65%	1,808	25,438
2009	21,840	218,178	0	23,630	241,808	8.00%	1,890	25,520
2010	25,128	240,264	0	23,630	263,894	8.37%	1,978	25,608
2011	24,042	260,725	0	23,630	284,355	5.35%	1,264	24,894
2012	26,861	308,353	15	23,630	331,998	5.92%	1,399	25,029
2013	20,772	338,241	34	23,630	361,905	3.41%	806	24,436
2014	20,934	351,867	40,019	23,630	415,516	6.47%	1,529	25,159
2015	23,302	428,727	87,935	23,630	540,292	4.56%	1,078	24,708
2016	23,821	317,868	75,627	23,630	417,125	2.71%	640	24,270
2017	26,047	364,306	90,095	23,630	478,031	0.86%	203	23,833
2018	30,646	457,203	121207	23,630	602,040	5.65%	1,336	24,966
합계	498,089	5,415,609	414,932	639,890	6,470,431	-	57,010	696,900

㈜ 사학연금공단 내부자료(2019)를 활용함

4. 현행 퇴직수당부담금 기금 부담의 비용부담의 부적정성

현행과 같이 사학연금법상 퇴직수당을 퇴직금의 성격으로 간주하여 학교경영기관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가와 연금공단의 연금기금이 부담하여 오고 있는 바,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금 성격으로 볼 때 비용부담 원리에 부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재원부담의 비용부담자의 부적정성의 문제를 들 수 있는 바, 교직원·학교경영기관·국가라고 하는 3자 부담의 원리와 달라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퇴직수당제도는 1991년에 새롭게 도입 되었으나, 그 비용부담 측면에 있어서는 기존 법체계에 부합하게 가입자와 사용자 및 국가가 공동으로 법정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학교경영기관들이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논지로 인하여 그 비용부담은 학교경영기관이나 국가 등이 비용부담 의무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비용부담을 하지 아니하려는 주장 때문에 퇴직수당제도의 도입 초기에 적잖은 문제가 있었다.

퇴직금은 사용자인 학교경영기관이 납부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 퇴직수당

비용부담에 있어서는 가입자와 사용자 및 국가가 재원을 부담하였다. 그런데 학교경영기관에서 재원을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학교경영기관 중심으로 불납운동을 전개하면서 동시에 위헌소송도 제기되었다. 그 이후 타협이 되면서 그 소를 취하하기도 하였다. 결국 그 비용부담은 학교기관의 경영상태가 양호할 때까지라는 국가와 사학연금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지금까지 연금재정의 불안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제4장 사학연금 퇴직수당 공단부담금 관련 회계처리 검토사항

1. 퇴직수당의 회계처리 성격 검토

우리나라 연금공단의 공적연금회계는 기본적으로 연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구분경리하고 있다. 연금회계는 연금제도 자체와 관련한 고유목적사업회계로 법인세 비과세대상 회계인 반면, 기금회계는 적립된 기금을 운용하여 영리의 수익사업을 하는 법인세 과세대상회계에 속한다. 즉, 연금회계는 사학연금 가입자 본인과 사립학교 법인 및 국가의 부담금 징수와 퇴직연금 급여 및 퇴직 일시금 등의 지급을 처리하는 고유목적사업의 회계를 다루고 있는 반면, 기금회계는 연금회계에서 적립된 기금과 당해연도의 부담금 수입과 급여 지출액의 차액인 잉여금을 운용하여 기금운용이익을 창출하여 퇴직급여와 일시금 급여의 재원으로 다시 활용하는 수익사업의 회계를 말한다.

이 두 회계는 공적연금회계의 큰 축으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 따로 떼어서 파악되어서는 아니된다. 뒤에서 서술하고 있는 〈그림 1〉의 부담금 징수와 퇴직급여 지급 재원 흐름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금회계에서의 잉여금은 기금회계에 전입되며, 부담금 수입보다 급여지출이 클 때에 부족분은 기금회계로부터 전입하여 충당하기 때문에 두 회계는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행 공적연금회계를 살펴볼 때는 연금회계와 기금회계를 동시에 살펴보아야 한다. 각 연금공단은 공단과 별도로 각 연금기금을 두고 있다. 연금공단은 연금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부담금을 징수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연금회계의 대상인 반면, 연금기금은 연금공단에서 징수한 부담금의 적립기금을 운용하는 기금회계대상에 속한다.

가. 현행 사학연금기금의 퇴직수당 재원 흐름도 분석

퇴직수당의 지급은 장기급여 지급의 하나로서 연금회계의 대상에 속한다. 연금제도의 주요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부담금의 갹출과 퇴직연금을 비롯한 각종 급여의 지급은 연금회계의 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퇴직수당의 지급 자체는 연금회계의 대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사학연금기금에서

매년 236억원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금회계에서 지출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법정기부금으로 손비처리를 하고 있다. 기금회계의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 신고를 위하여 기부금에 관한 세무조정과정을 거쳐 기부금 한도초과로 인한 일부 금액이 손금불산입이 되고 있어 법인세 과세가 되고 있는 것이다.

사학연금기금의 일반적인 부담금과 급여의 재원 흐름과정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인부담금과 법인부담금을 수입원으로 하여 급여를 지급하고(①) 난 후, 적립된 금액과 연금회계상의 결산상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연금기금에 100% 편입한다(②). 이렇게 편입된 기금은 기금운용사업, 대여사업, 부동산 임대사업 등 각종 다양한 기금운용을 통해(③) 원금과 운용이익을 사학연금기금에 다시 편입하고(④,⑤) 필요시 퇴직수당 급여의 재원으로 사학연금기금에서 지급한다(⑥). 반면, 연금기금은 연금급여의 지급이 필요할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연금회계에 충당하기도 하고(⑧), ①에서 당해 연도에 징수한 부담금을 곧바로 연금급여로 충당하기도 한다(⑧). 이때 퇴직수당의 금액 중에서 대학이상의 법인은 퇴직수당금액의 40%를 부담하고, 사학연금기금에서 236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부담한다(⑦). 이때 공단에서는 관련 금액을 선 지급을 하고 후에 국가와 학교법인에 청구를 하고 있다. 각종 부담금의 징수와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연금회계의 대상으로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있지 않지만, ⑥과 같이 사학연금기금에서 퇴직수당에 지급하는 236억원의 지급은 기금회계 측면에서 볼 때 과세대상에 속하며, 세무조정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기금회계에서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는 것은 〈그림 1〉에서 퇴직수당의 재원 흐름을 ⑥과 같이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1〉 현행 부담금 징수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의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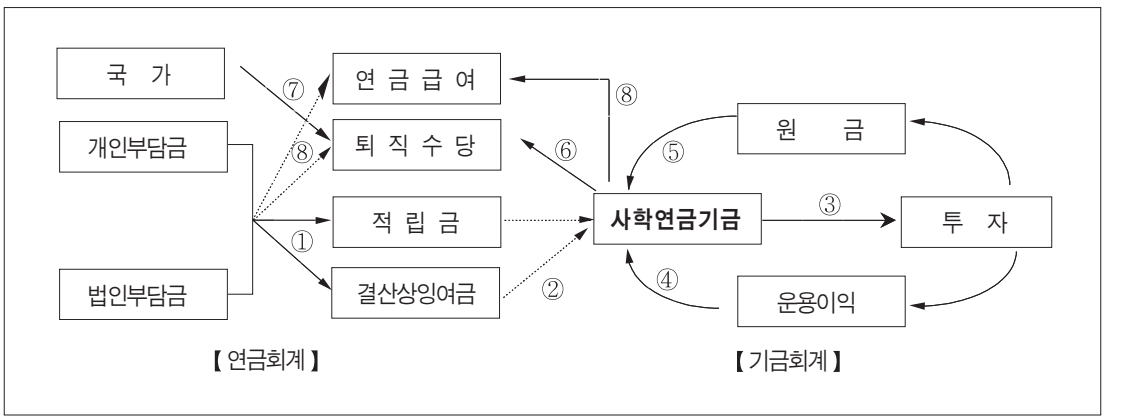

출처 : 김수성의 논문 p.130을 수정한 것임.

나. 공단의 퇴직수당부담금에 대한 현행 회계처리 방법 검토

현재 공단에서 지급하고 있는 퇴직수당부담금 236억원은 기금회계에서 기부금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본질적인 성격을 검토해보면 퇴직수당의 지급은 연금회계에서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타당하다. 이를 위해서는 연금회계에서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비록 비자발적으로 공단에서 부담을 하고 있지만 엄연히 학교법인을 대신하여 비용부담을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기존과 같은 과세당국의 해석을 인정하되 다만, 회계처리를 연금회계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사학연금법 제47조에는 법인부담금을 언급하고 있다. 제47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사학연금법시행령 제69조의3(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제1항 내지 제4항에서는 중등학교 교직원 및 특례기관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이하의 교육기관을 제외한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수당비용의 40%를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며, 공단에서 일부(퇴직수당 지급이 개시된 1992년에 공단이 부담한 금액인 매년 236억원)를 부담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사학연금법과 동법 시행령은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을 법인부담금 조문에서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되 단서조항으로 공단과 국가가 분담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은 중등학교 이하 및 특례기관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이하 교육기관의 퇴직수당 지급 지급에 드는 비용에 대한 법인부담금 부과를 면제하고 있는 점 및 그 외 교육기관의 경우에도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40%만을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상으로는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을 학교경영기관과 공단 그리고 국가가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단은 1992년 퇴직수당부담금의 부담을 개시하는 시점부터 현재까지 공단이 부담하는 퇴직수당부담금 236억원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자금운용사업회계상 사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 왔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은 인식과 논리에 근거한 것으로 추론된다. 우선, 공단의 퇴직수당분담금 지급 근거가 사학연금법의 법인부담금 조항에 단서 규정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공단이 부담하는 퇴직수당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 또는 학교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법조문의 귀속을 통해서 볼 때 법인이 부담해야 할 성격으로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사학연금법 제27조는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잉여금이 있으면 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 제27조의 후단은 문리적으로 엄격히 해석하면 결산서상의 모든 잉여금[24]은 연금기금으로만 전출시킬 수 있으며 퇴직수당회계의 수입으로 직접 전출시킬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잉여금이 일단 연금기금으로 전출된 이후에는 연금기금 일부를 퇴직수당회계의 수입으로 전출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따라서, 퇴직수당회계에 퇴직수당분담금 수입을 전입시켜 주기 위해서는 자산운용회계에서 사업외비용으로 계상하여 이전할 수밖에 없는 공단의 특수적인 회계처리방법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특성으로 볼 때 현행 회계처리방법은 공단의 특수한 회계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을 통해 원초적인 입장에서 공단의 두 회계인 연금회계와 수익사업회계를 동시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공단의 퇴직수당부담금 기부금 회계처리를 현행 기금회계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연금회계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2. 퇴직수당부담금에 대한 국세청 예규 검토

1995년 12월경 공단은 국세청에 공단이 부담하고 있는 퇴직수당부담금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사립학교 교원연금공단이 당해 공단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일부를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69조의3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수당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이 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이라는 답변을 수취한 바 있다.[25]

동 예규에서 인용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현행 세법상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0년까지는 법정기부금 전액이 손금 인정되었으므로 공단이 부담하는 퇴직수당부담금을 세무 상 전액 손금 인정받음으로써 공단은 퇴직수당부담금의 부담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이 없었다. 그러나, 2006년부터는 법정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한도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26]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의 금액으로 제한됨에 따라 퇴직수당부담금의 50%

24. 연금회계 자체에서 발생된 잉여금 뿐 만아니라 자산운용회계에서 발생된 잉여금을 포함한 전체의 잉여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25. 법인 46012-4425, 1995.12.04. 공단이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소득 중 일부를 퇴직수당부담금으로 지출한 경우 전액 손금산입되는 기부금에 해당된다는 예규 임.

상당액인 118억원에 대한 법인세 25.96억원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2006년 이후 대부분의 사업연도에 있어 퇴직수당부담금의 부담으로 인한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으로 인하여 공단의 수익사업에서 과세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누적 이월결손금의 공제 활용으로 인하여 공단에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액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이월결손금의 공제가 과세소득의 60% 상당액으로 제한됨에 따라 실제적으로 공단이 납부할 법인세가 발생되기 시작하였다. 공단이 부담하는 퇴직수당부담금을 법정기부금으로 해석하는 1995년 국세청 예규는 이제는 더 이상 공단에 법인세 부담을 해소해주는 감면조항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본 조항은 오히려 기부금 한도의 축소로 인하여 오히려 법인세 부담을 초래하는 법 조항과 예규로 전락되어 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퇴직수당 공단부담금 지급에 따른 법정기부금 회계처리에 대한 본질적인 검토 및 기금회계에서 처리하고 있는 회계처리의 원초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과세당국에 새로운 법 해석이나 질의해석을 통해 새로운 회계처리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995년에 받은 국세청 예규는 현재까지 퇴직수당부담금에 대한 국세청의 새로운 해석을 나온 바 없기 때문에 현재에도 유효하다. 동 예규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는 상황의 변화나 새로운 해석이 없는 상태에서 24년간 공단이 적용해오던 퇴직수당부담금에 대한 세무회계처리를 변경하는 것은 과세당국과의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1995년 국세청 예규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일부를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69조의3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수당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경우'를 전제조건으로 하여 퇴직수당부담금을 법정기부금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행과 같이 퇴직수당부담금을 결산 시 현행과 같이 수익사업인 자금운용사업 회계에서 사업외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유지하면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퇴직수당부담금의 법인세법상 처리방법에 대하여 재 질의하는 경우 1995년 예규와 마찬가지로 법정기부금으로 해석하는 회신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공단 스스로 퇴직수당부담금을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잉여금의 연금회계 간 배분이나 비수익사업의 부담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수익사업의 비용 요소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단에서는 기존 회계처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와 새로운 법해석 및

---

26. 당 공단의 경우 법정기부금이 없다면 당 공단의 과세소득에 대하여 과세소득의 100% 상당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 인정받음으로써 실질적인 과세표준은 0이 된다. 따라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법정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동 액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부인되게 되어 법정기부금의 손금한도 초과액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기부금에 대한 정의를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인세법 제24조는 기부금의 정의를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상 기부금은 1)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2)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3)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으로 정의되고 있다. 1)과 3)의 요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기부금으로 구분되기 위해서는 수익자와 금액이 특정되어야 한다. 공단이 부담하는 퇴직수당부담금은 1) 공단 자체의 고유 목적 사업의 일부인 퇴직수당사업회계상의 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공단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이며 2) 퇴직수당을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규정은 형식상 사학연금법상 법인부담금 조항에 규정되어 있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퇴직수당을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을 학교운영기관과 공단 그리고 국가가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담금은 사학연금법 규정에 따라 공단이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며 3) 퇴직수당부담금의 수익자와 수익자별 증여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공단이 부담하는 퇴직수당부담금을 엄밀히 해석하면 세법상 기부금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퇴직수당부담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자금운용사업 회계상 사업외비용으로 손금 처리하지 않고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의 연금회계 간 배분 과정으로 회계처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세법상 비수익사업인 연금회계에서의 지출로 회계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는 공단이 부담하는 퇴직수당부담금에 대한 공단의 회계처리 방법을 과세당국도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현재 공단이 지급하는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은 비록 기금회계에서 지급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있지만, 이를 엄밀하게 살펴보면 연금회계의 특성에 보다 부합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자발적 기부의 성격으로 인하여 현재 공단이 부담하고 있는 퇴직수당 부담금의 회계처리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27]

27. 이를 위해서는 과거 과세당국으로부터 받은 예규에 대하여 과세당국에 재 질의를 통해 퇴직수당부담금을 세무상 법정기부금으로 보지 않는 새로운 유권해석을 받을 필요가 있다. 과세당국인 법령에 대한 과거의 해석을 변경하는 새로운 유권해석을 회신하기 위해서는 심층적인 검토와 별도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통상의 일반 예규를 구하는 것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 있다. 퇴직수당부담금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목적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자금운용사업회계상 사업외 비용 및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관행을 2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유지하여 온 공단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본다.

제5장 사학연금기금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의 법인세제 회계처리 개선방안

공단은 사학연금법 규정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매년 236억원의 퇴직수당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다. 동 퇴직수당분담금이 공단의 수익사업회계인 자금운용사업회계에서 비용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수익사업회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시 퇴직수당부담액의 50% 상당액인 118억원이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이 허용되지 않음에 따라 매년 25.96억원에 상당하는 법인세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연간 동 법인세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연금기금 추가 조성의 기회를 일실하고 있다. 따라서 공단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특정 단체에 기부한 것이 아니라 사학연금법 규정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매년 공단의 자금운용회계에서 퇴직수당사업회계로 이관하여 주는 퇴직수당부담금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법인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1. 기존 방법대로 기금회계에서 처리하는 방안

가. 기부금으로 보지 않고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회계처리 방법

기존의 퇴직수당회계처리를 수익사업에서 처리하되 법 해석을 기존과는 다르게 해석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기부금은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특성이 있다. 더욱이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특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이 지급하고 있는 퇴직수당부담금의 경우에는 자의적 판단에 의거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기부금의 주된 특성은 특정 단체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기부금의 주된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에서 지급하는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은 사학연금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공단이 의무적으로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을 필연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특징이 있다. 이는 기부금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현행 법정기부금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항을 기부금으로 보지 않고 법에 의해 필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필요경비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현행세법상 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특별부담금을 준조세와 같은 비용으로 처리되도록 하고 있다.[28] 이러한 방법은 무엇보다도 현행 기금회계에서 처리되고 있는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현재에는 공단에서 임시방편적으로 부담금을 지급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궁극적으로는 학교법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재원이라는 부담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특성이 있으며, 현행 법조문에 부합한 회계처리라고 할 수 있다. 아래 〈그림 2〉의 ⑥과 같이 사학연금기금에서 지급을 하되 퇴직수당부담금 236억원을 기금회계상 필요경비로 보는 퇴직수당 재원의 흐름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그림 2〉기금회계에서 필요경비로 보는 퇴직수당 재원의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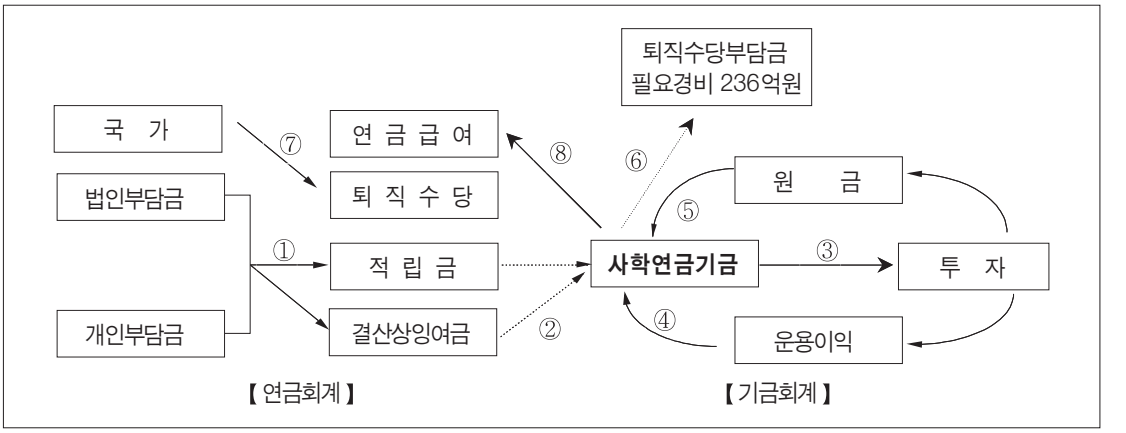

28. 준조세는 광의의 의미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의 주체에 의해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경제적 부담 중 조세를 제외한 것'을 말하나, 좁은 의미로는 '사용자로서의 반대급부가 명백히 반영되는 경우와 사회비용 유발에 대한 교정 책임의 결과 및 사회질서 위반에 따르는 경제적 제재의 결과(벌과금)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을 준조세로 보기 위한 논리는 다음과 같다. 준조세는 법적으로 조세가 아니기 때문에 세법에 의해 통제를 받는 국세나 지방세보다 관할 부처에 많은 재량권이 허용되고, 재원의 사용처나 적정 규모에 대한 국회의 직접적인 통제를 벗어나 있으므로 조성이나 운영이 비교적 쉽다. 현재 개인 및 법인 등의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는 준조세는 그 종류가 많고 금액도 커서 납세자인 국민이나 기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 그 부담의 자율성과 타율성을 기준으로 '협의의 공과금'과 '기부금성 공과금'으로 나눌 수 있다. 동업자 조합비・협회비・수출진흥기금 분담금을 비롯한 석유사업 기금 등의 제반 부담금 등이 전자에 속하며, 방위성금・새마을사업 기부금・체육진흥 성금・이재민 구호 성금・자선 성금・장학 기부금 ・사회복지 기금 등의 수많은 기부금 또는 성금이 후자에 속한다. 이와 같은 준조세의 성격으로 현행 공단의 퇴직수당분담금은 반드시 지출해야만 하는 것으로 기부금의 성격보다는 공과금의 성격에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나. 기부금 한도초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례규정 신설

사학연금기금의 세무조정은 기금회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기금회계상의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세법상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그러나 연금회계 성격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제도에 필요한 재원을 기금회계 대상인 연금기금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세무조정시 퇴직수당부담금에 대하여 기부금 한도초과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세무조정시에 이에 대하여 기부금 한도 초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의 규정을 마련하여 조세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행과 같이 퇴직수당부담금은 연금제도상에서 소득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회계 대상에 속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기금에서 지급함으로 인하여 기금회계의 적용을 받고 있다.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의 재원은 매년 일정한 금액을 지출하는 것으로서 이는 세금을 매년 정액으로 납부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현행 퇴직수당부담금은 사학연금기금이 부담하는 236억원은 학교경영기관에 기부한 것으로 보아 법정기부금으로 처리하고 있다. 과거에는 법정기부금의 한도가 100%로 설정되어 현재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문제가 그다지 크게 발생하지 않았지만 2011년에 이르러 법정기부금의 한도가 50%로 축소되면서 이와 같은 문제가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과거에는 이월결손금이 남아있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없었지만, 2016년의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이월결손금 적용 한도 규정이 마련되어 공단은 2017년부터 법인세 산출세액이 발생한 것이다. 현재는 이월결손금의 소진으로 인하여 매년 사학연금기금은 법정기부금 한도 초과로 인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29]

이에 따라 기금관리기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중 당해 법률에서 지급되어야 하는 퇴직수당부담금은 기부금의 한도액의 대상으로 보기 보다는 기부금한도 초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236억원에 대하여 전액 손비로 처리하는 회계처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위의 두 방안 중에서 필요경비로 보는 방안은 준조세로 해석하는 것이며, 기부금 한도초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조세로 보아 기부금 한도초과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

29. 연간 퇴직수당부담금(236억 원)×손금부인비율(50%)×지방소득세 포함 법인세율(22%=20%+2%)=25.96억원, 여기서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200억원 구간의 세율을 적용한 것임.

다. 고유목적사업비(가칭)의 내부회계규정 수정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현행 사학연금제도에서 지급되는 퇴직수당의 급여는 연금회계에 해당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기금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기금회계에 해당되어 이를 비용으로 처리 하였고, 법인세 신고 시 기부금 한도초과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퇴직수당급여의 성격과 제도의 취지 및 태동배경을 살펴볼 때, 이러한 제도는 연금회계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회계의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내용이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기금회계 상의 내부회계처리 규정을 수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퇴직수당제도가 불가피하게 태동되었고 이에 대한 재원부담의 일부를 사학연금기금이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액 비용으로 계상될 수 있도록 기금회계에서 새로운 계정과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즉, 현행과 같이 기부금으로 처리되고 있는 기금회계 규정을 수정하여 연금기금 회계에서는 연금제도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급되는 특성을 살려 '고유목적사업비(가칭)'라고 하는 계정과목을 신설하여 기금회계에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내부회계 규정의 수정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아래 〈그림 3〉의 ⑥과 같이 사학연금기금에서 지급을 하되 퇴직수당부담금 236억원을 기금회계 상 고유목적사업비(가칭)로 보는 퇴직수당 재원의 흐름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림 3〉기금회계에서 고유목적사업비(가칭)로 보는 퇴직수당 재원의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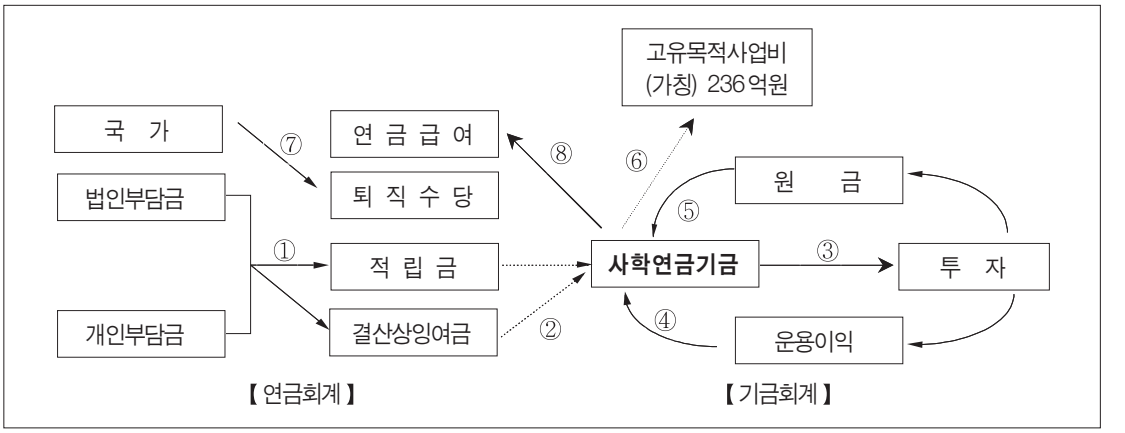

2. 연금회계에서 지출하는 방안 검토

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의 연금회계 간 배분과정으로 처리하는 방법

공단이 자의적 판단에 의거하여 특정 단체에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학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퇴직수당부담금을 부담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인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퇴직수당부담금을 세법상 수익사업으로 분류되는 자금운용사업회계상 사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현행 회계처리방법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의 연금회계 간 배분 과정으로 회계처리하거나 아니면 세법상 비수익사업인 연금회계에서의 지출로 회계처리 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회계처리방법 변경은 다음과 같은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사학연금법 제33조와 공무원연금법 제28조는 퇴직수당을 사학연금법상 급여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퇴직수당의 수입과 지출을 연금회계에서 수입과 지출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퇴직수당의 지급과 재원 조달은 공단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며 비수입사업인 연금회계의 일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공단의 퇴직수당부담금 부담은 사학연금법 제47조(법인부담금) 제3항 및 사학연금법시행령 제69조의3(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제3항에 따라 공단이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며 공단의 고유업무인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퇴직연금 급여지급 업무의 일환으로 부담하는 것이다. 사학연금법시행령 제69조의3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제1항은 학교운영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법인부담금 결정시 중등학교 교직원 및 특례기관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이하의 교육기관 교직원에 대한 퇴직수당비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수당비용 전액이 아닌 퇴직수당비용의 40%만을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학연금법은 퇴직수당비용을 근본적으로 학교운영기관과 공단 그리고 국가가 분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공단이 퇴직수당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은 학교운영기관이 법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법인부담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법률상 공단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퇴직수당비용을 부담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단이 부담하는 퇴직수당부담금은 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 더구나 퇴직수당부담금은 공단 자체의 판단과 자의적 결정에 따라 특정 기관(학교운영기관)에 공단의 고유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퇴직수당부담금의 수혜자와 수혜자별 수혜금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세법상 기부금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

셋째, 사학연금법 제43조는 '급여나 그 밖에 이 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그 비용의 예상액과 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비용부담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의 하나로 운용수익금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학연금법상 급여의 하나인 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비용을 자금운영사업회계상 잉여금의 배분을 통해 조달하는 것은 타당한 것이다.

그러나, 본 대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즉, 상기 논거에 불구하고 사학연금법 제27조는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잉여금이 있으면 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 27조의 후단을 문리적으로 엄격히 해석하면 결산서상의 모든 잉여금[30]은 연금기금으로만 전출시켜야 하며 퇴직수당회계의 수입으로 직접 전출시킬 수 없으므로 자금운용사업 회계상의 잉여금 배분 형태로 퇴직수당부담금을 퇴직수당회계로 이전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잉여금이 일단 연금기금으로 전출된 이후에는 연금기금 일부를 퇴직수당회계의 수입으로 전출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퇴직수당부담금 상당액을 연금회계에서 비용 혹은 전출금 형태로 퇴직수당회계로 이전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대안으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보수적 관점에서 공단이 부담하는 퇴직수당부담금의 기업회계상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 유권해석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회계처리를 변경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31]

나. 퇴직수당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 회계 준용

사학연금회계는 연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연금회계는 부담금 징수와 연금 및 퇴직일시금 등의 지급을 처리하는 회계이고, 기금회계는 적립된 기금을 운용하는 회계이다. 이러한 두 회계의 성격을 분류하여 볼 때, 퇴직수당의 지급과 관련한 내용은 연금회계의 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퇴직수당을 공단의 기금회계에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연금회계로의 회계규정을 수정하여 퇴직수당부담금이 기부금의 비용계상에서 고유목적을 위한 급여지급

30. 연금회계 자체에서 발생된 잉여금 뿐 만아니라 자산운용회계에서 발생된 잉여금을 포함한 전체의 잉여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31. 그러나, 사학연금법에 따른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이 불분명하며 설혹 유권해석기관으로 추정되는 관계기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다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한 실무적 대안으로서 공단이 부담하는 퇴직수당분담금의 회계처리방법의 변경의 적정성에 대하여 공단의 외부 자문기관 및 회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연금회계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사립학교법인을 대신하여 사학연금기금에서 부담하는 퇴직수당부담금에 대하여는 기부금의 한도초과액을 적용하지 않고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연금회계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기부금 한도초과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퇴직수당은 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 사망, 비공무상 장애 시 지급하는 퇴직 연금 급여의 일부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연금회계의 일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공단도 비수익사업인 연금회계를 연금사업회계, 재해보상사업회계, 퇴직수당사업회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퇴직수당회계를 공단의 고유 목적에 해당하는 연금회계의 일부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성격으로 볼 때 퇴직수당과 관련한 회계처리는 기금회계에서 처리하기 보다는 연금회계에서 처리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아래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퇴직수당의 재원을 ⑥과 ⑦처럼 재원의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림 4〉연금회계상 퇴직수당 재원 흐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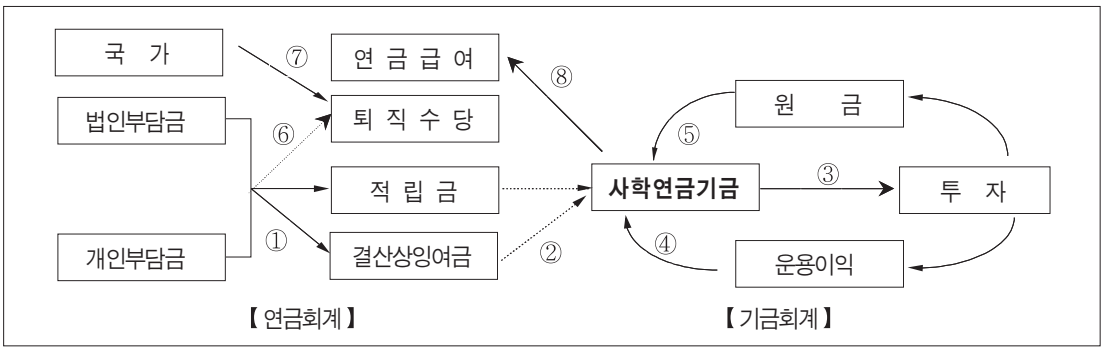

다. 연금회계에서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방법

기금회계상의 법정기부금으로 보기보다는 연금회계상의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퇴직수당의 일부인 퇴직수당 공단부담금 236억원에 대하여 기존의 기금회계상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연금회계상에서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과 같이 기부금으로 처리하되 연금회계상의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기부금 한도초과의 규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의 주체가 학교법인이며, 공단에서는 학교법인을 대신하여 지급하고 있음을 표명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연금회계에서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법 해석상 기부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3. 제3의 공무원연금기금과 유사한 퇴직수당특별회계 회계처리 방안 도입

기존과 같이 기금회계에서 이를 처리하는 방안과 연금회계로 변경하여 이를 처리하는 방안 이외에 제3의 퇴직수당과 관련한 별도의 퇴직수당특별회계 처리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 2012년도부터 공무원연금기금은 기존에 처리해오던 연금회계에서 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회계를 별도로 분리하여 구분경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변경한 주된 이유로는 연금의 지급에 관한 회계와 일시금 성격의 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회계를 분리하여 정보이용자에게 목적 적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이처럼 사학연금에서도 공무원연금처럼 퇴직수당에 관한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현재의 연금회계에서 지급하는 것에서 벗어나 각 학교법인과 국가로부터 기 지급한 금액을 되받아 내는 회계처리를 별도로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에서 지급하는 퇴직수당특별회계는 기중에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공무원이 퇴직할 경우 먼저 공단의 기금에서 지급하고 후에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수령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사학연금공단도 공무원연금과 같이 동일한 방식을 선지급 후청구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일부 기금에서 별도의 재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에는 공무원연금기금과 같은 회계처리방법을 통하여 전액 부담금 수입을 전액 급여로 지급하는 회계처리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2012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공무원연금기금 손익계산서인 퇴직수당 특별회계의 재무제표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공무원연금기금의 퇴직수당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Ⅰ. 사업수익	1,457,050	1,278,783	2,272,104	2,247,894	1,930,234	2,044,081	2,071,529
1. 연금수입	1,457,050	1,278,783	2,272,104	2,247,894	1,930,234	2,044,081	2,071,529
가. 퇴직수당부담금	1,457,050	1,278,783	2,272,104	2,247,894	1,930,234	2,044,081	2,071,529
Ⅱ. 사업외수익	34	47	172	84	72	12	61
Ⅲ. 특별이익	0	0	0	0	0	0	0
【수익 합계】	1,457,084	1,278,830	2,272,276	2,247,977	1,930,306	2,044,093	2,071,590
Ⅰ. 사업비용	1,457,030	1,278,783	2,272,104	2,247,894	1,930,234	2,044,081	2,071,529
1. 연금급여	1,457,030	1,278,783	2,272,104	2,247,894	1,930,234	2,044,081	2,071,529
가. 퇴직수당	1,457,030	1,278,783	2,272,104	2,247,894	1,930,234	2,044,081	2,071,529
Ⅱ. 사업외비용	34	47	172	84	71	11	61
Ⅲ. 특별손실	0	0	0	0	0	0	0
【비용 합계】	1,457,030	1,278,783	2,272,104	2,247,894	1,930,234	2,044,081	2,071,529
【순이익】	0	0	0	0	0	0	0

주) 2012년도 연금회계에서 퇴직수당특별회계 분리 신설, 공무원연금공단 통계연보 참조함.

4. 근본적 법적 해결을 위한 퇴직수당부담금 비용부담 방법 개선

퇴직수당의 재원은 근본적으로 공단이 부담할 성격이 아님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비용부담에 관한 연금법을 개정하여 이에 대한 비용부담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사학연금법에서는 사학교직원의 퇴직금에 해당되는 재원을 고용주인 사학법인이 마땅히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퇴직수당의 재원을 상당기간 연금기금에서 지급하였다. 향후에는 연금법을 개정하여 학교법인이 마저 236억원을 부담하거나 아니면 공무원연금기금과 같이 국가에서 퇴직수당 재원 전체를 떠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 방법은 공단에서 퇴직수당의 재원에 대하여 전혀 부담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나 오랫동안 연금법을 추진해 온 과거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실현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본다.

퇴직수당제도는 연금기금의 조기 소진을 야기하는 또 다른 요인 중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일반 민간 기업에서는 매년 근로자 월평균임금의 8.3%를 퇴직금으로 지출하기 위해 퇴직금 재원을 고용주가 부담하고 있는 반면, 사학연금법에서는 사학교직원의 퇴직금에 해당되는 재원을 고용주인 사학법인이 마땅히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퇴직수당의 재원을 상당기간 연금기금에서 지급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국가에서 전액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립학교의 교육은 국공립학교의 교육과 같고, 교육 사업은 국가사업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행 사학연금제도와 공무원연금제도는 그 내용상 거의 유사하고, 현행 국공립학교교원의 임무와 역할이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하등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와 같이 국가에서 모든 퇴직수당의 재원을 부담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면은 사학교직원의 사용자인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해야할 퇴직수당의 재원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한다는 것이다.

둘째, 퇴직수당을 민간기업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으로 간주하고 현행 사학연금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비용부담자를 원칙적으로 학교경영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퇴직수당의 재원부담자를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토록 하여 연금공단이 이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고, 학교경영기관에서 소속 학교 교직원에 대하여 현행 퇴직수당금액을 부담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현행 사학연금법에서 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각 학교기관별로 자체 규정에서 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그 내용을 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경영기관이 이와 같은 재원을 부담하게 되면 사학연금기금에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우선, 현재 사용자의 재원이 아닌 국가의 재정과 연금기금으로 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방안으로 개선이 될 경우

퇴직수당부담금을 지급하지 않게 됨으로써 국가의 재정절약과 사학연금기금의 재정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학연금 측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7년 6월 12일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신동근 의원 대표 입법발의로 개정을 요청 중에 있다.[32] 발의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법」에 사학연금을 비롯한 모든 법인부담금을 원칙적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되,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법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법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결국, 제47조 제1항에서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는 것을 더욱 강하게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법안 개정 심사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심사결과가 나와 법 개정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33]

과거 학교경영기관은 퇴직수당의 법인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었지만, 공단의 지속적인 법 개정 추진 노력과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4년도부터는 퇴직수당의 재원의 일부를 대학이상 법인에 한하여 40%를 부담하는 법 개정의 결과를 볼 때 퇴직수당의 재원 부담은 결국 학교경영기관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5. 각 대안별 장 · 단점 비교 분석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단에서 지급한 퇴직수당부담금의 법인세제 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첫째, 퇴직수당의 회계처리를 기존의 방법대로 기금회계에서 처리하되 이를 법정기부금으로 보지 않고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회계처리 방법을 들 수 있다. 이 방법은 법정기부금의 한도초과 규정을 회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단에서 어쩔 수 없이 부담하고 있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공단이 부담하고 있는 퇴직수당부담금은 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특별부담금으로 보아 준조세와 같은 성격의 비용으로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다.

---

32.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의안번호 [735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3인)을 참조함.
33.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의안번호 [200735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3인)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함.

이와 같은 방법은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이 비자발적으로 매년 일정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특성을 감안한 것으로 기부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렇지만 수익사업을 하는 회계에서 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수익사업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기금회계에서 처리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행 퇴직수당부담금을 기금회계에서 처리하되 기부금 한도초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례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회계처리 방법은 기부금 한도 초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의 규정을 마련하여 조세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 방법은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의 성격을 조세의 성격으로 보아 매년 일정액을 국가를 대신하여 납부하는 것을 감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치 조세에 대하여 기부금의 한도초과액을 적용하는 것은 세법상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의 재원은 매년 일정한 금액을 지출하는 것으로서 이는 세금을 매년 정액으로 납부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회계처리 방법은 기부금 한도초과 규정의 회피가 가능하며 여전히 기금회계에서 처리되고 있어 국가나 학교경영기관을 대신하여 지급하고 있는 재원부담의 귀속주체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특징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퇴직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계정과목을 기부금의 성격의 계정과목으로 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고유목적사업비(가칭)라는 계정과목을 신설하여 내부회계 처리방법을 수정하는 것이다. 이 방법 역시 기부금의 한도초과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재정부담의 귀속주체가 기존과 같이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내부회계규정을 수정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둘째, 현행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의 회계처리를 연금회계에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있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의 연금회계 간 배분 과정으로 회계처리하거나 아니면 세법상 비수익사업인 연금회계에서의 지출로 회계처리 하도록 변경하는 것은 기금회계에서 연금회계로 이체하는 배분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연금회계에서 지급하므로 공단의 향후 공단의 고유업무로 인식될 소지가 있다. 이 방법은 기업회계상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 유권해석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회계처리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법 개정을 위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 단점이 있다.

또한, 퇴직수당의 회계처리 대상이 연금회계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의 회계를 준용하는 것이다.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이 기부금의 비용계상에서 고유목적을 위한 급여지급 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연금회계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법 역시 새롭게 고유목적사업비(가칭)라는 계정과목을 신설하여 내부회계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의 회계처리를 기금회계가 아닌 연금회계에서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있다. 이는 기존과 같이 기부금으로 처리하되 연금회계상의 법정기부금으로 처리하므로 기부금 한도초과의 규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의 주체가 학교법인이며, 공단에서는 학교법인을 대신하여 지급하고 있음을 표명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연금회계에서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법 해석상 기부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셋째, 기존 기금회계와 연금회계도 아닌 제3의 퇴직수당특별회계 처리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법인세 세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기부금으로 처리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퇴직수당에 관한 지급은 1991년 당시 제도 태동시점부터 기금회계로 처리하여 오던 것을 연금회계로 변경하고자 함에 따른 예규의 해석 변경에서 간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새로운 회계처리의 신설로 재무제표의 구분경리가 더욱 복잡할 수 있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사학연금의 입장에서는 별도의 퇴직수당 특별회계를 도입하기보다는 연금회계 내에서 퇴직수당회계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 과세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퇴직수당 공단부담금 비용주체의 개선을 들 수 있다. 퇴직수당의 재원부담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던지, 아니면 현행 사학연금법에서 비용부담자를 학교경영기관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지만 과거부터 공단에서 여러 차례 법 개정을 추진해 본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법 개정의 실익이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대안들을 종합해 볼 때 기존에 기부금으로 처리되던 것을 법에 의하여 강제부담하는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기부금 한도초과로 인한 세무상의 불합리한 점을 하루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행과 같이 학교경영기관을 대신하여 재원을 부담하는 것도 연금재정 측면에서는 크게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게다가 법인세까지 납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 개정은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래 〈표 8〉에서는 각 대안별 장·단점을 간략히 요약해 본 것이다.

〈표 8〉 각 대안별 장 · 단점 분석

대안	장점	단점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방법	· 세무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기금회계에서 지급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을 대신하여 지급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기금회계 자체가 수익사업회계임에도 불구하고 퇴직수당 지급이 수익사업을 위한 필요경비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음.
기부금 한도초과 대상에서 제외	· 기금에서 조세의 성격으로 처리하되 궁극적으로는 학교법인이 부담할 것이라는 것을 명시하는 것임.	· 기금회계에서 지출되는 것으로서 국가에 납부하는 조세의 성격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음.
고유목적사업비 계정과목 신설	· 기금회계상 전액 손금으로 인정 가능	· 내부회계 규정의 수정이 보완 필요
잉여금의 배분 과정으로 처리하는 방법	· 기금회계에서 연금회계로 이체하는 배분과정으로 이해 · 향후 법인세를 납부할 가능성은 없어짐.	· 연금회계에서 지급하므로 공단의 향후 공단의 고유업무로 인식될 소지가 있음. · 기업회계상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 유권해석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회계처리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퇴직수당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지출 회계 준용	· 연금회계에서 고유목적사업의 비용으로 처리 · 세무조정 대상이 되지 않음.	· 내부회계 규정의 수정이 보완 필요
연금회계상 기부금 처리	· 연금회계에서 기부금으로 처리 · 세무조정 대상이 되지 않음. · 궁극적인 재원조달 책임은 학교법인에 있음을 명기함.	· 통상 기부금이라는 용어는 세법상에서 사용하는 용여로서 연금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임.
퇴직수당 특별회계 도입	· 기존 예규의 새로운 해석을 받을 필요가 없음.	· 새로운 특별회계의 창설로 회계처리가 복잡해질 수 있음.
퇴직수당부담금 비용부담 방법 개선	· 연금법 개정으로 학교법인에서 부담토록 하여 본질적으로 재원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는 것임.	· 매년 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함.

제6장 결 론

현행 사학연금제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노령연금 이외에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퇴직금제도와 유사한 성격의 퇴직수당이라는 제도가 있다. 이는 일반기업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근로보상적 급여의 성격에 해당된다. 현재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퇴직수당 제도는 그 성격은 후불임금 성격 이외에 사회보장 성격과 공로 보상적 성격이 가미되어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퇴직수당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반면,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퇴직수당은 사용자와 국가 및 공단이 재원을 부담하고 있다. 공단은 제도 운영자로서 사학연금기금에서 236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사학연금기금의 경우에는 1991년부터 학교법인의 재정이 열악하여 임시방편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236억원을 매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법인을 대신하여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법정기부금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의 지출에 관한 회계처리를 공단의 고유목적사업회계인 연금회계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회계인 기금회계에서 처리하고 있다. 과거 기금회계상에서 236억원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하여 지출금액의 50%가 기부금 한도초과 되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2017년도부터는 실제로 법인세가 납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퇴직수당과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세 가지의 회계처리 방법 개선과 한가지의 비용부담 주체의 변경을 통한 법 개정으로 분류하고자 하였다. 우선, 퇴직수당의 회계처리를 기존과 같이 기금회계에서 처리하되 법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금회계에서 법적으로 지출되어야만 하는 준조세의 성격인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방법과 기부금 한도초과 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는 방법 이외에 수익사업인 기금회계에서 반드시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 방법은 기존과 동일한 기금회계에서의 회계처리 방법이지만 기존과는 계정과목의 성격이 달라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기부금 한도초과를 회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로, 퇴직수당은 기부금으로 처리 되고 있으나, 이러한 퇴직수당은 연금제도의 급여의

일종으로서 본질적으로 살펴볼 때 연금회계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사학연금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의 회계처리는 연금회계의 준용을 제시한다. 연금회계와 기금회계의 두 회계의 유기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의 지급을 잉여금의 배분 과정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또한, 퇴직수당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 회계를 준용하거나 공단 퇴직수당부당금의 본질적 성격이 연금회계에 속하고 있으므로 연금회계상에서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이 방법 역시 연금회계는 비수익사업회계로 세무조정에서 제외되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잉여금의 배분과정으로 처리되는 것이 가장 최선의 회계처리 개선방법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기존의 기금회계에서 연금회계로 전환하기에는 회계처리의 방법 및 세무조정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의 회계처리는 공무원연금공단의 회계처리 방법과 동일하게 퇴직수당에 관한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퇴직수당제도의 본질에 가장 부합한 회계처리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넷째는 연금제도의 개선과 관련된 사항으로 퇴직수당부담금 부담 주체를 개선하는 법 개정을 유도하는 것이다. 퇴직수당부담금의 재원을 학교경영기관 내지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은 기본적으로 사학연금기금의 법인세 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지만, 현실적인 가능성이 약하다고 본다.

공단에서는 사학연금기금의 운용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이외에 제반 제도적인 이유로 인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단자체의 세무회계의 개선과 법적인 개선을 통하여 현행과 같은 법인세 과세는 비과세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사학연금 재정안정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사학연금법의 제도 내에 존재하는 퇴직수당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사학연금기금의 법인세 과세에 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통하여 사학연금기금의 재정안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상황은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은 조만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지출의 특성을 검토해보는 것이 본 연구에서 다른 기금의 특성과는 다소 다른 특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일반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지출 행태를 실제적인 수치를 들어 분석해보지 못하였다. 또한 일반 비영리법인에서 지출하는 기부금의 형태를 분석하여 일반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한도초과 사례를 분석해 본다면 기금에서 지출하는 기부금의 형태와의 차이점을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기금과 비영리법인의 기부금의 특성과 기부금 한도초과의 사례를 분석해볼 수 있는 연구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강강원(2005), 「퇴직수당의 법률적 성격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제19권 제1호, pp.65~109.
- 김수성(2007), 「사학연금기금 운용이익의 과세여부에 관한 법제적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2008), 「공적연금기금 운용이익의 과세여부에 관한 법제적 연구 : 사학연금기금 운용이익 과세를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제25권 제2호, pp.93~138.
- _____(2009), 「연·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세무학연구」 제26권 제2호, pp.117~155.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2010~2018), 사학연금기금 세무조정계산서
- _____(2006),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조문별 해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_____(2018), 「연금실무 길라잡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신홍식·노인철(2000), 「국민연금 기금 운용 회계기준의 실제 비교」,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센터 연구보고서 2000－06.
- 전춘옥·이효익·이석영(2001), 「연구보고서7호 연금회계」, 한국회계연구원.
- 한국보험학회(1999), 「사학연금 책임준비금 산정 및 재정안정화 방안」 연구 용역보고서.
- _____(2001), 「사학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 방안 연구」 사학연금관리공단 용역보고서.
- 한국사회보험연구소(2008), 「사학연금의 종합적 발전방안 연구」 사학연금관리공단 용역보고서.
-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2006), 「사학연금재정안정화 방안연구」 사학연금관리공단 용역보고서.
- 국민연금공단 Homepage http://www@nps.or.kr/
- 군인연금공단 Homepage http://www@mps.go.kr/
- 공무원연금공단 Homepage http://www@geps.or.kr/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Homepage http://www@tp.or.kr/